

의안번호	2212040
의 퇴 인	김선교 의원
회 답 일	2026. 3. 25.
추계번호	25B424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도에서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2,000만원(연평균 1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제24조)	144	144	144	144	144	720	144

주: 1. 16개 시·도에서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2.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 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 전부개정법률안의 조항 중 현행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현행 사업이 유지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동일·유사한 조문이라도 현행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은 재정수반요인으로 간주함

[표 2] 현행법 및 전부개정안의 구성 비교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명: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 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 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2장 임업 진흥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7조(임업 진흥의 기본원칙)
<신 설>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제5조(소유구조 개선)	제9조(임업 생산성 향상 지원)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10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11조(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제7조(유통구조 개선)	제12조(유통 활성화 지원)
제12조 삭제 <2012. 5. 23.>	<삭 제>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삭 제>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삭 제>
제15조(행위제한)	<삭 제>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	<삭 제>
<신 설>	제13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4조(가공 활성화 지원)
<신 설>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신 설>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신 설>	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 설>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신 설>	제3장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신 설>	제20조(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21조(사유림경영 지원)
<신 설>	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신 설>	제23조(산림경영관리시설의 설치)
<신 설>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4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25조(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26조(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품질검사)	제27조(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28조(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29조(품질표시 등)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30조(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정보공개)	제31조(정보공개)
제18조의9(통계조사)	제32조(통계조사)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제33조(수출 촉진 등)
<신 설>	제5장 임업인의 육성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제34조(산림경영 교육·훈련 등 지원)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5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36조(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37조(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신 설>	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지원)
<신 설>	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신 설>	제40조(산림평문가의 선정)
제3조의2(임업인의 날)	제41조(임업인의 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삭 제>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삭 제>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삭 제>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삭 제>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삭 제>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삭 제>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삭 제>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삭 제>
제5장 산촌의 진흥	제6장 산촌 진흥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4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제44조(산촌조사)
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시행자)	제4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제4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8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50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51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7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52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5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등)	제54조(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등)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제55조(보고 및 검사)
제30조(청문)	제56조(청문)
제30조의2(수수료)	제57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9장 벌칙
제32조(벌칙)	제60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제61조(과태료)

자료: 전부개정안 및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전부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 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2.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임업소득(임업인의 소득 중 임업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의무 규정
3	안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임산물 우수관리·품질인증 및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임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임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임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목재생산 이외의 임업에 포함된 사업을 융·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 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3조(유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4조(가공 활성화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및 우수가공품의 개발·생산·홍보·판매촉진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산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임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임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1. 스마트임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임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임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임업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스마트임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임업 육성지구(이하 “스마트임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스마트임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9조(임산물 수입 추천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게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22조(사유림경영지도 등)	산림청장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 지도업무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유림경영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지도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유림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1. 조립수종 선정 등 조림에 관한 사항 2. 기준벌기령, 입목수확구역 등 입목수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3	안 제37조(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임업인을 선정하고 전문임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임업인을 선정하고 경영임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이 임업에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임업인의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청년임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40조(산림명문가의 선정)	산림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명문가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52조(한국 임업진흥원의 설립)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53조(한국 임업진흥원의 사업)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1항)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업·산림에 관한 정보·통계의 생산·활용 지원 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지원 3. 임업기계 장비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 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7. 해외산림자원개발, 국제산림협력 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국제감측사업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9. 임업 분야 및 산촌지역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 임산물 및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홍보·판매촉진 지원 11. 임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관리 및 지원 12.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2호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함(제2항)	재량·의무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단위: 백만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유림 경영·임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6조(재정지원)	×	• (현행) 제4조 → (개정안) 제6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유림 경영 및 임업·산촌의 진흥은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산림청은 이를 위하여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6</th></tr><tr><td>조림(지원)</td><td>18,357</td></tr><tr><td>숲가꾸기(지원)</td><td>81,983</td></tr><tr><td>묘목생산</td><td>17,864</td></tr><tr><td>목재생산관리</td><td>7,540</td></tr><tr><td>청정임산물 이용증진</td><td>12,717</td></tr><tr><td>임산물생산기반조성</td><td>47,512</td></tr><tr><td>임도시설(지원)</td><td>185,411</td></tr><tr><td>임도시설(자율)</td><td>99,567</td></tr><tr><td>임도시설(제주)</td><td>280</td></tr><tr><td>임도시설(세종)</td><td>1,364</td></tr><tr><td>산림정책개발</td><td>4,330</td></tr><tr><td>임업기능인양성</td><td>12,024</td></tr><tr><td>산림휴양등산증진</td><td>20,496</td></tr><tr><td>산림사업 종합자금</td><td>12,908</td></tr><tr><td>목재산업육성</td><td>16,023</td></tr></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개정안은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사업명	2026	조림(지원)	18,357	숲가꾸기(지원)	81,983	묘목생산	17,864	목재생산관리	7,54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2,717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7,512	임도시설(지원)	185,411	임도시설(자율)	99,567	임도시설(제주)	280	임도시설(세종)	1,364	산림정책개발	4,330	임업기능인양성	12,024	산림휴양등산증진	20,496	산림사업 종합자금	12,908	목재산업육성	16,023
사업명	2026																																		
조림(지원)	18,357																																		
숲가꾸기(지원)	81,983																																		
묘목생산	17,864																																		
목재생산관리	7,54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2,717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7,512																																		
임도시설(지원)	185,411																																		
임도시설(자율)	99,567																																		
임도시설(제주)	280																																		
임도시설(세종)	1,364																																		
산림정책개발	4,330																																		
임업기능인양성	12,024																																		
산림휴양등산증진	20,496																																		
산림사업 종합자금	12,908																																		
목재산업육성	16,023																																		
3	안 제8조(임산물의 품질관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로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임산물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우수관리·품질 인증 및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이 임산물 및 임산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품질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림청은 임산물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실태조사, 판로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임산물 지리적표시 활성화 (1535-300)</td><td>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실태조사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리적표시품 소비촉진 및 지리적표시제 인지도 제고</td><td>10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임산물 지리적표시 활성화 (1535-300)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실태조사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리적표시품 소비촉진 및 지리적표시제 인지도 제고	100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임산물 지리적표시 활성화 (1535-300)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실태조사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리적표시품 소비촉진 및 지리적표시제 인지도 제고	100							
4	안 제11조(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	• (현행) 제9조 → (개정안) 제11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 산림복합경영은 수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목재 생산 산지에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함께 재배하여 단기 소득을 창출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임산물생산 기반조성 (1535-301)</td><td>산지 및 노재 등 임업인들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td><td>18,563</td></tr></table> * 부담비율: 국 20~70 : 지 20~30 : 융 0~30 : 자 0~40 － 다만, 향후 목재생산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뿐만 아니라 산림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어를 ‘복합’에서 ‘융·복합’으로 개정한 것으로, 산업의 규모와 지원수요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움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1535-301)	산지 및 노재 등 임업인들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	18,563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1535-301)	산지 및 노재 등 임업인들에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	18,563							
5	안 제13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산물 36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4조(가공 활성화 지원)	—	• (현행) 제10조 → (개정안) 제14조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조제목 변경)								
7	안 제15조(소비 활성화 지원)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535-300)</td><td>임업인들에게 시장경쟁력을 갖춘 임산물의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친화형 임산물 경쟁력 강화</td><td>36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535-300)	임업인들에게 시장경쟁력을 갖춘 임산물의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친화형 임산물 경쟁력 강화	360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535-300)	임업인들에게 시장경쟁력을 갖춘 임산물의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친화형 임산물 경쟁력 강화	360									
8	안 제17조(스마트임업 육성)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스마트임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하며, 스마트임업 육성지구 지정에는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18조(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스마트임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임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스마트임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정될 지원센터의 수 및 지원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10	안 제19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탁업무의 범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22조(사유림경영 지도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산림경영지 도원 운영 (1535-301)	산림소유자에게 선진 임업기술· 지식 및 정보 보급과 현장중심 산 림경영 지도를 위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 도원 배치·운영 중	16,900
12	안 제24조(사유림경영 분쟁조정위원회의 설 치·운영)	○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시·도에 두는 사유림경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비용에 대해 추계		
13	안 제37조(임업인 등 의 육성·지원)	—	(현행) 제17조 → (개정안) 제37조 - 미대상 —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4	안 제38조(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 · 지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
			임업인 육성지원	청년임업인·전문임업인 등 대상 맞 춤형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 문교육기관 지정·관리	1,082
			산림사업 종합자금	기·신규대출 이차보전에 대하여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정책자 금을 지원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 화 및 소득증대 도모	12,908
15	안 제39조(청년임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임업인 육성을 위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청년임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 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 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 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6	안 제40조(산림전문가 의 선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 속)에 걸쳐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전문가로 선정하여 포상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산림전문가의 선정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 등 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 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7	안 제52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한국임업진흥원 지원 (1542-300)</td><td>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게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지원하여 임업진흥 활성화를 도모 * (산정기준) 인건비 14,918백만원, 경상경비 2,041백만원, 사업비 9,077백만원, 시설비 1,098백만원, 예비비 479백만원, 자체수입 △3,329백만원</td><td>24,284</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1542-300)	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게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지원하여 임업진흥 활성화를 도모 * (산정기준) 인건비 14,918백만원, 경상경비 2,041백만원, 사업비 9,077백만원, 시설비 1,098백만원, 예비비 479백만원, 자체수입 △3,329백만원	24,284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1542-300)	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게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지원하여 임업진흥 활성화를 도모 * (산정기준) 인건비 14,918백만원, 경상경비 2,041백만원, 사업비 9,077백만원, 시설비 1,098백만원, 예비비 479백만원, 자체수입 △3,329백만원	24,284									
	안 제5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사유림경영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6개 시·도에서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24조제2항¹⁾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1) 제24조(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로 본 추계에서는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라 위원회 개최횟수, 민간위원 수 등을 다음과 같이 가정²⁾

-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산림청 제출자료)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추계 결과, 각 시·도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7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 (D=A×B×C×16개, 백만원)	144	144	144	144	144	720

주: 1. 16개 시·도에서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2.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산림청에 따르면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가 아니며 자문, 분쟁조정 등 현안 발생에 따라 운영하는 비상설기구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